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5083808 판결 [선급금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흥

담당변호사 박소현

변론 종결2019. 5. 30.

판결 선고2019.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30,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6. 27.까지 연 6%,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원고의 E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계약금액 '2,354,000,000원(부가가치세 214,000,000원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35,400,000원(VAT 포함)', 선금금 '235,400,000원(VAT 포함)', 기성부분금 '공사 기성률에 따라 매 1개월마다 지급' 등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 [선금금]

- ① 수급인은 선금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본조 제5항에 따라 선금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착공시 을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지급한다.
- ④ 수급인은 선금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갑에게 선금금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선금금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 ⑤ 선금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금 정산액 = 선금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⑥ 도급인은 선금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⑦ 도급인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미지급금에서 그 반환받을 선급금 잔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34조 [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5. 수급인의 부도 또는 부도로 인한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도급인이 판단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없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한 날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나. C은 2015. 4. 2.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235,400,000원', 보험기간 '2015. 4. 2.부터 2016. 3. 31.까지',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금에서 주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을 뺀 금액이다.

다. 원고는 2015. 4. 2.자로 C로부터 위 보증보험증권과 선급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4,000,000원, 세액 21,400,000원)를 발행받고 2015. 4. 7. C에 선급금 23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감리사정을 거쳐 인정된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과 그에 따른 선급금 공제액을 확인하여 기성 선급금 정산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선급금 중 일부(합계 138,786,667원)를 공제하고 C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성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왔다.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 1회 기성 관련

2015. 6. 15. 기성청구액 293,333,333원, 선급금 정산신청액 29,333,333원

감리사정금액 264,000,000원, 선급금 공제액 26,400,000원

2015. 7. 2. 1회 기성금 237,600,000원 지급

- 2회 기성 관련

2015. 7. 18. 기성청구액 111,111,111원, 선급금 정산신청액 11,111,111원

2회 기성 감리사정금액 111,111,111원, 선급금 공제 11,111,111원

2015. 7. 20. 합계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5. 8. 4. 2회 기성금 100,000,000원 지급

- 3회 기성 관련

2015. 10. 21. 기성청구액 55,000,000원, 선급금 정산신청액 5,500,000원

감리사정금액 55,000,000원(부가세 포함), 선급금 공제액 5,500,000원

2015. 10. 21. 합계 49,5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5. 10. 27. 10,500,000원, 2015. 10. 29. 39,000,000원 각 지급

- 4회 기성 관련

2015. 11. 30. 기성청구액 167,200,000원, 선급금 정산신청액 16,720,000원

감리사정금액 155,555,556원, 선급금 공제액 15,555,556원

2015. 11. 25. 합계 1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5. 12. 3. 32,000,000원, 2015. 12. 4. 108,000,000원 각 지급

- 5회 기성 관련

2015. 12. 23. 기성청구액 166,100,000원, 선급금 정산신청액 16,610,000원

감리사정금액 140,000,000원, 선급금 공제액 14,000,000원

2015. 12. 23. 합계 12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5. 12. 29. 126,000,000원 지급

- 6회 기성 관련

2016. 1. 23. 기성청구액 168,300,000원, 선급금 정산신청액 16,830,000원

감리사정금액 143,000,000원, 선급금 공제액 14,300,000원

2016. 1. 23. 합계 128,7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6. 2. 2. 128,700,000원 지급

- 7회 기성 관련

2016. 2. 23. 기성금 청구액 110,000,000원, 선급금 정산신청액 11,000,000원

감리사정금액 88,000,000원, 선급금 공제액 8,800,000원

2016. 2. 24. 합계 79,2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6. 3. 2. 79,200,000원 지급

- 8회 기성 관련

2016. 3. 23. 기성금 청구액 182,600,000원, 선급금 정산신청액 18,260,000원

감리사정금액 150,700,000원, 선급금 공제액 15,070,000원

2016. 3. 22. 135,63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6. 3. 29. 135,630,000원 지급

- 9회 기성 관련

2016. 4. 26. 기성금 청구액 155,100,000원, 선급금 정산신청액 15,510,000원

감리사정금액 143,000,000원, 선급금 공제액 14,300,000원

2016. 4. 26. 합계 128,7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6. 5. 3. 128,700,000원 지급

- 10회 기성 관련

2016. 5. 20. 기성금 청구액 154,000,000원, 선급금 정산신청액 15,400,000원

감리사정금액 137,500,000원, 선급금 공제액 13,750,000원

2016. 5. 28. 합계 123,75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6. 5. 24. 123,750,000원 지급

마. C은 2016. 5. 24. 원고로부터 1,484,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성금으로 수령하였고 원고로부터 미지급받은 기성금이 없다는 내용의 기성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C은 2016. 5. 31.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C의 사정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시공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6. 6. 7.경 C에, C이 부도로 인한 공사 계속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이행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C에 선급금으로 235,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이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을 뺀 금액을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황에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혀 원고가 C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원고가 C에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에서 합계 138,786,66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C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이 남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피고는 원고가 C의 기성금 청구 이후 이루어진 기성고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C에 지급한 선급금 235,400,000원에서 공사대금으로 공제된 금액 138,786,667원을 뺀 금액은 96,613,333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도급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로 인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8,783,031원(96,613,333원×1/11)을 공제한 87,830,302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7,830,3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금액 변경 과정 등 소송의 경과를 참작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풍